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## 〔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1공구)〕

- 점검일시 : 2019.12.03 (화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추락재해 예방</p> <p>- 초안산지하차도 공사 전체적으로 외부작업비계 최상단 발판 상부안전난간 미설치로 수직방망 보수/보강 실시.</p> <p>- 초안산지하차도 종점부 하부슬래브 단부에 추락위험 표식 부착요망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)</p>		2019.12.10	
		<p>- 초안산지하차도 공사 전체적으로 외부작업비계 최상단 발판 상부안전난간 미설치로 수직방망 보수/보강 실시.</p> <p>- 초안산지하차도 종점부 하부슬래브 단부에 추락위험 표식 부착 실시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)</p>	
<p>○ 가설통로 안전</p> <p>- 폐기물 야적함에 상승/하강할 수 있는 사다리 등이 미설치 되어 투기 또는 정리를 위해 상승/하강 시 전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치요망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</p>		2019.12.05	

<p>○ 기계기구 안전</p> <p>- 거푸집조립 작업장에 사용 준비 중인 절단용 핸드그라인더의 보호덮개가 해체된 상태로 절단 중 톱날이 파손될 경우 작업자에게 비래사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덮개를 해체하지 않도록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 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</p>		<p>2019.12.07</p> <p>- 거푸집조립 작업장에 사용 준비 중인 절단용 핸드그라인더 보호덮개 설치로 파손시 비래사고 예방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</p>	
<p>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</p> <p>- 콘크리트 양생용 보일러 2기 중 한기가 하부 부식이 심각한 상태로 압력용기의 안전성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점검 후 사용요망</p> <p>- 안전밸브는 압력용기 안의 압력이 기준 이상 올라갈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로 사용 전 작동여부를 점검 요망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(안전밸브 등의 설치)</p>		<p>2019.12.06</p> <p>- 콘크리트 양생용 보일러 압력용기의 안전성 여부 외부 보일러 전문가를 통한 점검 실시</p> <p>- 안전밸브 압력용기 작동 여부 전문가를 통한 작동여부 점검 실시</p> <p>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(안전밸브 등의 설치)</p>	 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세륜세차시설은 동절기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시 가동 가능하도록 방한조치 요망</p>		<p>2019.12.10</p> <p>- 세륜세차시설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시 가동 가능하도록 방한조치 실시</p>	